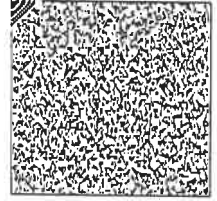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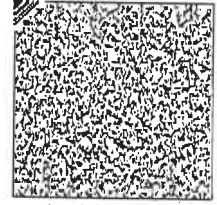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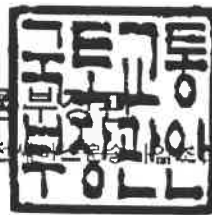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고용지원 업종(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고용안정 지원제도 및 주의사항 안내

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2425(2020.8.26.)호의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20.3.16.)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상향(일 6.6→7만원), 무급휴직 신속지원(4.27.~), 고용·산재보험료를 유예하는 등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3.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약 6개월 연장(종료 시점 '20.9.15. → '21.3.31.)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여 총 240일을 지원(8.20, 고용부 결정)하고 있습니다.
4. 각 전세버스사업자단체는 관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증사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제도에 대해 전파하여 주시고, 특히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행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한 후에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



수신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17개 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최이진 행정사무관 양찬윤 버스정책과장 나기호 전일 2020. 10. 5.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71 (2020. 10. 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